

## [4단계 BK21 사업] 광운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

### “초연결 인간경험 웰니스 융합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교육연구팀” 운영규정

제정일 : 2021. 03. 18.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4단계 BK21 사업 “초연결 인간경험 웰니스 융합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교육연구팀”(이하 연구팀)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본 내규는 한국연구재단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을 준수하며, 본 연구팀의 모든 참여인력(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등)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 (사업기간)** 총 사업기간은 2020년 09월 01일 ~ 2027년 08월 31일(1~8차년도)이며, 개별 사업년도는 각 차년도 03월 01일부터 다음 해 02월 말일이다. 단, 1차년도는 2020년 09월 01일부터 2021년 02월 28일까지, 8차년도는 2027년 03월 01일부터 2027년 08월 31일까지이다.

#### 제2장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

**제4조 (목적)** 본 내규는 연구팀 참여인력의 연구 및 교육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사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조 (조직 및 기능)** 본 연구팀은 광운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으로 구성한다.

**제6조 (연구팀장)** 연구팀장은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.

① 연구팀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, 행정인력 등 참여인력의 구성을 결정한다.

- ② 연구팀 예산 운영 및 조정,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을 조정한다.
- ③ 참여대학원생 장학금, 신진연구인력,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한다.

**제7조 (참여교수 자격)** 본 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연구팀의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광운대학교 전임교원이며, 전자융합 공학과 소속이어야 한다.
- ② 연구년 중이거나,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(논문지도 등)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③ 휴직, 국내 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는 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.

### 제3장 참여교수 평가 기준

**제8조 (목적)** 본 내규는 연구팀의 참여교수 평가에 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9조 (참여교수 평가)**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팀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하고,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.

- ① 참여교수 성과급은 참여교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인당 연 240만원(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120만원 이내)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- ② 참여교수의 평가는 각 사업년도 1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하며, 해당년도의 누적 연구실적과 연구팀 기여도를 종합하여 평가한다. 평가 기준안은 아래와 같다.

[표 1] 교수평가 지표

평가항목	세부사항	평가점수
연구 및 산학협력 실적	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환산편수 합계	20
	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IF 합계	10
	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	10
	기술이전 실적(기술료)	20
연구팀 기여도	연구팀 운영 참여	40
총계		100

**제10조 (참여교수 변경)** 참여교수에 대한 연구팀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, 참여교수 회의를 진행한다. 참여교수의 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-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- ② 연구 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
- ③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
-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
## **제4장 참여 대학원생 활용 기준**

**제1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연구팀 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학생들 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과 대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학생 선정 기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**제12조 (참여대학원생 자격)**

① 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·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

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③ 참여대학원생의 연구교육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게 있다.

### **제13조 (지원대학원생 자격)**

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말하며, 참여대학원생 총 수의 70% 이내에서 선발된다.

② 연구장학금은 최저 기준액 석사과정생 월 70만원, 박사과정생 월 130만원, 박사수료생 월 100만원으로 하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4조 (연구장학금 지급 기준)** 지원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 장학금 신청을 한다.

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정하고 연구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.

② 평가 항목(총점 100점)

1. 사업 참여 및 기여도 50점(행사 참여 등)

2. 연구 업적 우수성 50점(논문, 학술발표, 특허, 기술이전, 연구 참여도 등)

3. 입학 첫 학기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참여교수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 지원이 가능함.

## 제5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기준

**제16조 (신진연구인력 자격)**

①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로 구분하여 선발하며, 본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따른다.

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③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는다.

**제17조 (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)**

①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사업 연구팀 홈페이지에 공고된 모집 안내에 따라 접수한 자 또는 연구팀 내 참여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1차 선발한 후, 연구팀장의 최종 평가로 선발한다.

②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는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을 따른다.

## 제6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**제18조 (사업비 편성)** 본 연구팀은 「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」,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」,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, 대학 내부의 승인에 따라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. 단, 예산 변경

시 항목별 비율을 준수하며,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다.

**제19조 (대학원생 연구장학금)** 본 연구팀에 소속된 지도교수의 전일제 참여대학원생 중 70% 이내 인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.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'제4장 참여 대학원생 활용 기준'에 따라 지원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.

**제20조 (신진연구인력 인건비)**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)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 다만,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### **제21조 (국제화경비)**

① 국제학술회의: 참여교수가 실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을 1차적으로 추천하고, 최종적으로 내부회의를 통해 연구팀장이 국제학술회의의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. 참여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
② 해외연수: 연구팀에서 진행 중인 해외공동 연구를 수행하고, 연구능력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을 추천하고, 내부회의를 통해 연구팀장이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 연수비용은 교내 여비규정에 따라 책정한다.

② 해외학자 초빙의 경우 해외학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팀 내부회의를 통해 연구분야 및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. 지원금액은 교내 여비 규정 및 강사료 규정을 따른다.

**제22조 (사업단 운영비)** 총 사업비의 10% 이내 또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, 지원항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## **제7장 기타**

**제27조 (기타)** 참여인력의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연구단에서 구비한다. 기타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」을 따른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